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3942호

시행일자 2018. 6. 28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27호(2018.6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14호, 2018.6.1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
-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
-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(사유 :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)

나. 시행일 : 2018.7.1.

- 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
2. 상급병실(2·3인실) 보험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.
3. 한시적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